

제 규 정

· 사무국 인사 규정	16
· 사무국 복무 규정	19
· 사무국 보수 규정	24
· 차기회장 및 부회장 선출 절차 규정	26
· 직선 평의원 후보 선출 절차 규정	28
· 포상규정	29
· 특별상 수여 규정	31
· 젊은 연구자 학술대상 수여 규정	32
· 부문회 운영 규정	33
· 부문회 회장 및 감사 선출 절차 규정	36
· 부문회 신설과 유지에 관한 규정	37
· 부회 설치 및 신설과 유지에 관한 규정	38
· 위원회 설치 규정	39
· 기술위원회 신설, 운영 및 폐지에 관한 규정	40
· 전문위원회 신설 및 폐지에 관한 규정	41
· Working Group 설치 및 운영 규정	42
· 학회지 편집 규정	43
· 국문논문지 편집 규정	44
· 영문논문지(JEET) 편집 규정	45
· 국문논문지 논문 심사 규정	46
· 영문논문지 논문 심사 규정	47
· 학회지 및 논문지 투고 규정	48
· IJCAS 사무국 관리(운영 및 편집) 규정	49
· 연구개발사업 운용 및 관리 규정	51



사 법 단 대 한 전 기 학 회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사무국 인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 “학회” 라 한다) 규칙 제10장에 의거하여 상근직원의 채용, 보직, 전보, 승격 및 승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11.12 개정]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사무국 상근직원에게 적용하며 다른 규정에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용 : 직제상 편성된 인원을 소정의 채용절차를 거쳐 사무국에 근무하게 함을 말한다.
2. 직위 :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 보직 : 직원에게 일정한 직무와 책임을 부여하는 근무지정을 말한다.
4. 전보 : 직원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5. 승호 : 기본급의 호봉이 현 호봉에서 상위호봉으로 증가됨을 말한다.

제 2 장 채 용

제4조(직원 채용의 원칙) 직원의 채용은 소정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직급의 충원계획에 따라 고시 또는 전형에 의하여 채용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시 또는 전형에 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제5조(직원의 채용 기준) ① 신규직원(신입 및 경력직원 포함)의 초임 호봉 및 경력환산은 별지 제1호를, 호봉의 결정은 경력, 연령 등을 참고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입사일로부터 1년은 계약직으로 하고 이 기간 중 업무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계약 만료 1개월 전에는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장은 신규직원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계약직 직원에 대한 중간평가를 인사위원회 간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구비서류) 직원을 채용할 때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2. 졸업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4. 재정보증서 (연간 1만원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한 보증인의 재산세증명 및 인감증명 첨부 또는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보험금액 3백만원 이상의 재정보험 증권) ※ 회계 담당자만 해당
5. 여권용 사진(3.5cm×4.5cm) 3매(3개월 이내 촬영)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징계(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7. 병역 의무자로서 병역 기피사실이 있는 자
8. 기타 결격이 있는 자

제8조(인사발령) 직원의 채용, 전보 등은 회장이 행하며 이를 위임할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행한다. 단, 전보는 3년을 기본으로 한다. [2021.11.12 개정]

제 3 장 보직, 전보, 승격 등

제9조(보직의 원칙) 직원의 보직은 학력, 경력, 자격, 기능 및 적성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정원관리) ① 사무국 상근직원의 정원은 7명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직제의 정원은 전체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인사발령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직무대리 및 대우) ① 상위보직자의 공석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하위 보직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에 따라 하위보직자를 상위보직자 대우에 보직할 수 있다.

제12조(정기승호, 특별승호, 승호보류) 직원의 승호는 매년 12월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다음 년도 1월에 적용한다. [2023.12.08 개정]

1. 정기승호 : 현 승호를 기준으로 근속 1년 이상인 자를 대상 1호봉 승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특별승호 : 정기승호 해당자로서 승호예정일 전 1년간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한 공로가 인정” 되는 경우에는 특별 승호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다.
3. 승호보류 : 정기승호 해당자로서 승호예정일 전 1년간을 기준으로 하여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승호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다.
4. 40호봉 이후에는 승호가 없는 것으로 한다. [2023.12.08 개정]

제13조(보직자 임명) 보직자의 임명은 다음과 같다. [2023.12.08 개정]

1. 사무국장, 팀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단) 사무국장은 팀장 중에서, 팀장은 팀원 중에서 정한다.
2. 직급은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으로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정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승진 기간은 주임, 대리는 최소 4년으로 하고 과장, 차장, 부장은 최소 5년으로 한다.

제14조 (보직자 임기) 보직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2023.12.08 개정]

1. 사무국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인사 위원회

제15조(인사위원회) 직원 인사 처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회장 소속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021.11.12 개정]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중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회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임원과 사무국장으로 한다. [2021.11.12 개정]

③ 간사는 위원장이 정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의사 진행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18조(소집)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021.11.12 개정]

제19조(성립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 정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의결사항은 위원장 및 2인 이상의 참석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 ① 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사항은 회의록을 첨부하여 회장이 시행한다. 단 특별승호 및 승호보류는 이 사회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2021.11.12 개정]

② 회장은 의결사항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할 수 있다. [2021.11.12 개정]

제21조(부의안건)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다음과 같다. [2021.11.12 개정]

1. 주요한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승호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023.12.08 개정]
5. 보직자 선임에 관한 사항
6. 사무국의 직원평가 및 업무 성과금 결정

부 칙

1.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3년 12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사무국 복무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규칙 제10장에 의거하여 학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무조건을 확립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각자 맡은바 책무를 완수케하여 사무의 능률 향상을 기하는 한편 직원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21.11.12 개정]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며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장 준수 사항

제3조(성실의무) ① 직원은 학회의 제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상사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부과된 직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② 상사는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항상 성실히 부하를 지도 통솔함과 동시에 술선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직원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라도 업무상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회 업무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거나 거래처로부터 사례, 중여 및 향응(饗應)을 받거나 금전을 대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11.12 개정]

제4조(손해보상)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회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3 장 근무 시간

제5조(근무 시간) ① 통상근무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원의 시무시간, 휴식시간 및 종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하나 특별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출근, 결근, 병가) ① 직원은 시무시간 전에 출근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결근계(별지 제1호)를 제출하여 전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기치 않은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결근하는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근이 1주일 이상일 때에는 공의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9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2021.11.12 개정]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 병에 걸려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제7조(조퇴) 직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근무시간 전에 퇴근할 때에는 사무국장에게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외출) 직원이 근무시간 중에 외출할 때에는 사무국장에게 보고 한다.

제9조(지각·조퇴 및 외출의 영향)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산정한다.

제10조(휴일) 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유급)로 한다.

1. 토요일, 일요일
2. 국경일 또는 정부가 정하는 공휴일
3. 근로자의 날
4. 대한전기학회 창립기념일
5. 학회 공식행사에 따른 휴일 근무 시 대체 휴일

제 4 장 휴가 및 출장

제11조(연차휴가) ① 직원의 연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며,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② 3년 이상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년수 매 2년에 대하여 제1항의 연차유급휴가에 1일을 가산한 휴가를 준다. 단, 총 휴가일수는 20일을 한도로 한다. 이후 발생하는 연차는 대체 휴가로 한다.

③ 연차휴가 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할 수 있다. 단, 업무외의 국외여행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연차휴가 계산기간은 전년도 입사일자부터 당 해년도 입사일자 전일까지로 한다.

⑤ 연차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차휴가 2회는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

제12조(공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법, 기타 법령에 의한 동원,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천재지변·교통단절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특정한 사정으로 회장이 인정한 기간 [2021.11.12 개정]

제13조(특별휴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청원에 의거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여행을 요할 때에는 왕복 소요 최단일수를 가산한다.

① 축하일

1. 본인 결혼 : 5일
2. 자녀 결혼 : 1일
3. 본인 및 배우자 형제, 자매 결혼 : 1일
4. 부모, 배우자 부모 회갑 : 1일

② 기일

1.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승중 및 배우자, 자녀 사망 : 5일
2. 본인과 배우자의 (외)조부모, 백숙부모, 형제자매, 자손 사망 : 2일

③ 특별휴가

1. 배우자의 출산일 : 3일
- ④ 질병휴가 : 연간 누계 90일(휴가일수의 계산은 연차휴가 계산기간에 따른다.)
- ⑤ 자녀입양 : 본인의 경우 20일
- ⑥ 출산휴가 : 90일

제14조(휴가의 허가)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원하는 자는 미리 별지 제3호에 의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육아 휴직 및 육아 단축근무) 최대 1년이며, 자녀 1명 당 1년 휴직 및 단축근무를 쓸 수 있다. [2021.11.12 개정]

제16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2주(14일)을 초과하는 휴가는 공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절차 및 결과) 이 규정에 의한 휴가를 허가 받음으로서 급여 및 제반 근무상태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021.11.12 개정]

제18조(점직금지) 직원은 회장의 승인 없이 타 직장에 점직(유급)할 수 없다. [2021.11.12 개정]

제 5 장 여 비

제19조(적용) 회장 및 모든 임직원이 공무로 국내외에 출장할 때 여비에 관한 사항이다.

제20조(구분) 여비는 항공, 철도, 선박, 고속버스, 자동차운임, 현지 교통비, 식비, 숙박료, 일당으로 구분한다.

제21조(여비 등 계산) 현지 교통비, 식비 및 일당은 출장 일수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22조(통신료) 출장 중 공무로 인한 통신료는 증빙서류 또는 지불 증에 의하여 그 실비를 지급한다.

제23조(여비지급) 여비는 출장 전 국내외 여비지급 기준에 준 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출장 후에는 국내외 여비지급 규정에 의해 정산해야 한다.

제24조(국내출장) 회장 및 회장의 허가를 득한 임직원의 국내 출장 여비 지급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회장 및 임직원이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에는 국내여비 정액 표에 의한 운임 및 현지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요 유류대, 도로사용료 등은 실비 정산한다.

제25조(국외출장) 학회 임직원의 모든 국외출장은 사전에 별지 제3호에 있는 출장명령서를 작성해서 회장의 허가를 득해야하며, 회장 및 회장의 허가를 득한 임직원의 국외 출장 여비 지급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2021.11.12 개정]

제26조(근거리 출장) 학회 직원이 학회 업무로 출장업무를 마치고 귀임 또는 귀가할 수 있는 충분한 교통편이 있는 근거리 출장의 경우의 여비지급은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수행출장) 국내 및 국외 출장의 경우 하위 직급의 직원이 상위 직급을 수행 출장 할 때에는 교통비 및 식비는 그 상위직과 같이 동액으로 지급하고 숙박비 및 일비는 8할 해당액을 지급한다. 다만 8할 해당금액이 해당직급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직급 기준금액을 지급한다.

제 6 장 휴직, 퇴직 및 해임

제28조(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일신상 사정으로 휴직을 청원하였을 때
2. 질병으로 3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결근하였을 때
3. 병역법에 의한 징소집에 응하였을 때
4. 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되었을 때
5. 사적인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 되었을 때
6. 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7. 육아휴직을 청원하였을 때

제29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제28조 제1호 및 제2호의 휴직은 6개월 그 외의 휴직은 그 기간으로 한다.

제30조(제직연수 계산) 휴직기간은 근무연수에 산입한다. 다만, 제28조 제1,5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의 경우는 제외 하되 제5호에 있어서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근무연수에 산입한다. [2021.11.12 개정]

제31조(퇴직기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한다.

1. 정년에 달할 때
2. 사망할 때
3. 제28조 제1호의 휴직에 있어서 제28조의 휴직기간이 종료하여도 복직 원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휴직 조건이 해소되었을 때
4. 제28조 제3호의 휴직에 있어서 직업 군인이 되었을 때
5. 기타 각호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제32조(퇴직)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서(별지 제4호)를 제출하고 소정의 수속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사무인계) ① 간부직원의 퇴직·휴직 또는 근무 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담당 사무의 서류·물건 및 그 개요와 미결건명 등을 열거하여 장래의 처리요령 또는 자기의견을 첨부한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금전·물품의 출납 기타 재산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인계서를 작성하고 또는 장부에 기재하여 그 현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2021.11.12 개정]

제34조(정년퇴직) ① 사무국 직원의 정년은 만 60 세로 한다.

② 직원은 그 정년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 12월 31일에 퇴직한다. 단, 희망자에 한하여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35조(해임)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금고이상 형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2. 무단결근이 10일 이상 계속될 때
3. 징계에 의하여 파면될 때
4. 신체의 고장 또는 정신이상으로 직무를 담당하지 못할 때
5. 금치산, 한정치산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6. 기구 개편으로 부서가 폐쇄, 축소되거나 정원이 조정되었을 때
7. 기타 특히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36조(해임의 예고) 사무국 형편상 부득이 직원을 해임할 때에는 30일전에 예고 한다.

제 7 장 문서처리 규정

제37조(적용) 사무국의 문서처리에 관한 사항이다. [2021.11.12 개정]

제38조(문서수발) ① 모든 발신 문서는 결재를 받은 후 일부 인을 찍어 문서 발송부에 기재하고 발송하여야 한다.

② 모든 수신 문서는 일부 인을 찍어 문서 접수부에 기재하고 회장 및 회장이 지정하는 임직원에게 회람결재, 처리한 후 보관 정리한다.

제39조(비밀문서) 인비, 비가 표시된 문서는 회장의 지시 하에 사무국장이 개봉하여 처리한다.

제40조(첨부물이 있는 문서) 문서에 현금, 수표, 수입인지, 유가증권 또는 물품 등의 첨부물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부에 명기하고, 그 문서 여백에 첨부물의 종류, 수량 등을 기입하고 해당 직원에게 전달한다.

제41조(결재) 기안문서는 순서에 따라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장이 특히 긴급을 요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결재만으로 문서를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행 후 이를 관계자에게 관람시켜 후결을 받아야 한다.

제42조(대리결재) 회장 유고시에는 차기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대리결재하고, 회장에게 사후 보고 한다. [2021.11.12 개정]

제43조(사전집행) 업무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업무집행의 일부를 사무국장 전결로 집행하고, 후결을 받을 수 있다.

제44조(사전집행 범위) 사전집행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수신·발신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행정사무의 집행, 다만 인사업무는 제외한다.
2. 회원에 관한 통상적인 업무집행
3. 이사회 또는 각종 회의에서 승인 또는 결의된 사항으로서, 회장이 승인한 사항의 집행
4. 세입의 예금 및 세출을 위한 인출
5. 예산범위 내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출. 단 100만원 이상은 재무이사, 1,000만원 이상은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한다.
6. 기타 회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45조(완결문서) 완결된 문서는 분류별로 보관하고, 완결문서의 보존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영구보존

- 가. 현행 정관, 규칙, 규정 및 이에 준하는 중요문서
- 나. 효력이 영속하는 문서
- 다. 재산대장
- 라. 금전출납부 및 보조장부

2. 5년 보존 : 현행 효력이 계속되는 문서

3. 1년 보존 : 각종 일반문서로서 전 제1,2호에 속하지 않는 주요 문서 [2021.11.12 개정]

제46조(문서의 폐기) 제45조 제2,3호의 보존기간을 초과한 문서는 당해 연도 말에 폐기한다. [2021.11.12 개정]

제 8 장 보건, 후생 및 재해 보상

제47조(건강진단) 사무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직원 또는 일부 직원에 대하여 건강진단 또는 예방주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8조(재해보상) 직원이 업무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자녀 학비 보조금) 학회 사무국 직원으로서 근무연수 5년 이상인 직원의 자녀 중 대학생(전문대학 포함)에 한하여 재학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사무국 직원 자녀 학비 보조 기금의 한도 내에서 년 1회 250만원을 매년 11월 중에 지급한다. [2021.11.12 신설, 2023.12.08 개정]

부 칙

1.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3년 12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사무국 보수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 “학회” 라 한다) 규칙 제10장에 의거하여 사무국 상근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11.12 개정]

제2조(보수의 종류) 사무직 상근직원 보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연봉 : 12개월 월급, 특별상여금과 업무 성과금을 합한 금액 (별지 제1호의 “사무국 직원 호봉에 따른 연봉표” 참조)
2. 기타 : 퇴직금, 직책수당

제 2 장 임금계산 및 지급방법

제3조(일할계산 및 단수처리) 임금의 일할 액은 월의 대소를 불문하고 월급의 30분의 1로 계산하며 10원미만의 단위는 사사오입한다.

제4조(계산기간) 근태 및 임금의 계산기간은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로 한다.

제5조(지급일) 임금의 지급일은 당월 25일로 한다. 다만 25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제6조(신분의 변경) 신분의 변경시의 임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신규 채용자의 임금은 출근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2. 승호 등 신분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다만, 정기승호자의 월 급여는 일할 계산하지 아니하고 승호 된 호봉으로 일괄 계산한다.
3. 퇴직, 휴직 또는 사망 시의 임금은 발생 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제7조(휴직중의 임금) 질병 휴직자에 대하여는 휴직발령 다음달부터 2개월에 한하여 휴직 당시의 월급만을 지급한다. (보직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결근) 질병 이외의 사사로 인한 30일 이내의 유계결근 직원에 대하여는 10일 이내는 월급을 지급하고 10일을 초과하는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 하여 지급한다.

제9조(계약직 직원의 급여계산) 계약직으로 채용된 사무직 직원에 대한 급여계산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월급과 직책에 따른 수당을 매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단, 퇴직금을 제외한 기타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월급, 특별상여금 및 업무성과금

제10조(월급, 특별상여금, 업무성과금) ① 월급은 별지 제1호의 “사무국 직원 호봉에 따른 연봉표” 를 기준으로 모든 직원은 본인 연봉의 13분의 1을 월급으로 하여 1년 12개월을 지급한다. [2021.11.12, 2023.12.08 개정]

② 특별상여금은 별지 제1호의 “사무국 직원 호봉에 따른 연봉표” 를 기준으로 모든 직원은 본인 연봉의 13분의 1을 특별상여금으로 하고, 추석에 50%, 구정 50%를 지급한다. [2021.11.12, 2023.12.08 개정]

③ 특별상여금은 반기별 상여기간을 계속 근무한 자에게 지급한다. 단, 상여기간의 3분의 2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그 근무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021.11.12 개정]

④ 업무성과금은 하계학술대회 잉여금과 출판 잉여금(스프링거, 누리미디어등)의 5%를 모아 성과 기금으로 적립한다. [2021.11.12, 2023.12.08 개정]

⑤ 회장은 상근직원의 업무실적을 매년 11월에 평가하여 매년 12월에 업무성과금을 지급한다. 업무 성과금 지급 기준은 별지 제2호에 따른다. [2021.11.12 개정]

제11조(사무국 직원평가) 사무국의 직원평가는 다음 각 호로 하되 각 호별 가중치는 해당 년도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2021.11.12 개정]

1. 개인 평가
2. 직원 간 평가
3. 사무국장의 사무국 직원 평가
4. 인사위원회 평가

제 4 장 퇴직금 및 직책수당

제12조(퇴직금) 근속 년수 1년 이상인 직원에 대하여 년 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퇴직금은 과학기술인 공제회 퇴직연금에 매월 퇴직금의 12분의 1을 과학기술공제회에 입금한다. 단, 업무 성과금에 따른 퇴직금 변동 사항은 매년 12월에 최종 정산한다. [2021.11.12 개정]

제13조(근속년수의 계산) 근속년수의 계산은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날까지 계산한다.

제14조(수령권자) ① 퇴직금은 퇴직자가 생존 시에는 그 본인, 사망 시에는 그 유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유족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된 바에 따른다.

제15조(특별활동비 지급 범위 및 지급액) ① 특별활동비 지급은 회장 및 사무국장으로 한다. [2021.11.12, 2023.12.08 개정]

② 특별활동비의 지급액은 별지 제3호에서 규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16조(직책수당) ① 국장, 팀장 직책 부여자에게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2023.12.08 개정]

② 직책별 수당은 별지 제4호에서 규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2023.12.08 개정]

부 칙

1.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3년 12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차기회장 및 부회장 선출 절차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 “학회” 라 한다) 정관 제3장 제13조 제①항 제5호에 의거하여 차기회장 및 부회장 선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후보 등록) ① 차기회장 및 부회장 후보 등록공지는 9월 하순에 하고, 후보자는 평의원으로서 선출 선거일 20일전까지 평의원 5인 이상(부회장은 3인 이상)의 추천 서명이 포함된 입후보신청서를 본 학회 사무국에 접수해야 한다.

② 사무국은 후보자 등록현황을 등록종료 익일부터 선거일까지 회원에게 후보자 등록 정보를 전기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③ 차기회장 후보는 선거당일 간단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3조(사전 투표) ① 선거일에 참석하지 못하는 평의원은 선거 일주일 전부터 선거전날까지 학회 사무국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단, 방역 등의 문제로 인하여 대면으로 선거에 문제가 발생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자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전투표 및 전자투표에 참여한 평의원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4조(선출 순서) 차기회장 및 부회장을 같은 날에 선출하며, 차기회장을 우선 선출하고, 다음에 부회장을 선출한다.

제5조(규정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평의원회 심의 의결을 요한다.

제2장 산업계 차기회장 추대

제6조(추대 시기) 산업계 차기회장 추대는 3년 주기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년도에 추대를 못하는 경우 차년도로 순연한다.

제7조(추대위원회 구성) ① 산업계 차기회장 추대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산업계 차기회장 추대가 시행되는 해 2월 말까지 구성하여 추대 확정일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한다.

② 위원회는 차기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전임회장 5인, 5개 부문회장 및 평의원회 추천 2인(총 13인)으로 구성한다.

③ 전임회장 5인은 평의원인 전임회장단에서 호선으로 정하며, 평의원회 추천 2인은 2월 평의원회에서 추천한다.

제8조(추대위원회 임무) 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당해년도 산업계 차기회장 추대 공지
2. 학회발전에 기여할 후보의 적극적 발굴
3. 추대후보 선정

제9조(추대 방법) ① 위원회 구성 직후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당해년도 산업계 차기회장 추대가 있음을 공지 한다.

② 후보 선정은 제2조의 후보등록 공지 60일 전에 완료 한다.

③ 후보 선정이 불가능한 경우, 후보 추대가 차년도로 순연되어 제3장의 절차에 따라 차기회장 선출이 진행됨을 즉시 공지 한다.

④ 최종 후보 1인은 선정된 후보 중에서 위원회 재적인원 2/3의 찬성으로 정하며, 재적 평의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위임 포함)한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대한다.

제3장 차기회장 선출

제10조(선출 시기) 산업계 차기회장 추대가 확정되지 않는 년도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차기회장 선출을 한다.

제11조(차기회장 선출 절차) ① 정관 제27조 2항에 의거한 재적 평의원(직간선평의원 및 당연직 평의원) 과반수 이상

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차기회장을 선출한다. 단, 단일후보인 경우에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위임 포함)으로 선출할 수 있다.

- ②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으로 2차 투표를 하여 다득표자를 차기회장으로 선출한다. 단,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4장 부회장 선출

제12조(부회장 선출 절차) ① 정관 제27조 2항에 의거한 재적 평의원(직간선평의원 및 당연직 평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의 5인 이내 후보자 기표 중 득표순위로 5인을 선출한다. 단,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② 부회장은 산업계 2명,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에 각 1명 이상(총 5인)을 선출한다.
 ③ 전항의 산업계는 대학 및 전문대학을 제외한 연구소, 기업체 및 기관을 의미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각각 1명씩 선출한다.
 ④ 후보 등록 인원이 선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한 선출은 차년도 회장이 총회의 위임을 받아 해당 인원내에 대한 임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4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경과조치) 1994년도에는 회장, 차기회장 및 부회장을 선출한다.
3. 본 규정은 1999년 10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00년 10월 13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05년 12월 9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07년 9월 14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11년 7월 2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11년 8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12년 8월 10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2013년 6월 14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11. 본 규정은 2016년 1월 15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12. 본 규정은 2017년 10월 3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13. 본 규정은 2020년 10월 16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14. 본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한다.
15. (경과조치) 2023년도의 차기회장 선출은 산업계 인사 추대를 원칙으로 한다.

직선 평의원 후보 선출 절차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5장 제23조 제①~②항 및 규칙 제5장 제9조 제①항에 의거하여 직접 선출 평의원 선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11.12 개정]

제2조(평의원 후보 선정기준) 규칙 제9조 제①항 제1호에 따라 이사회에서 직선 평의원수의 2배수 이내의 직선 평의원 후보를 선정한다. 직선평의원 후보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른다. [2021.11.12 개정]

1. 정회원 활동 : 3년 이상(단 특별회원사 대표, 임원은 예외)
2. 대학·전문대학 : 정·부교수로서 논문 1편 이상 게재 (최근 3년간 논문지 또는 영문지) [2007.09.14 개정]
3. 공무원 : 5급 이상 [2007.09.14 개정]
4. 정부투자기관 : 2직급 이상 또는 팀장 이상 [2007.09.14 개정]
5. 연구기관 :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서 논문 1편 이상 게재 (논문지) [2007.09.14 개정]
6. 대기업·상장기업 : 임원 또는 전기분야 부서장급 이상 [2007.09.14 개정]
7. 중소기업 : 이사급 이상 [2007.09.14 개정]
8. 나이 : 만 38세 이상 65세 미만 (단 당해연도 정년대상자는 제외) [2007.09.14 개정]
9. 직장 상한제 : 대학 10인 이내, 산업체 25인 이내
10. 기타 학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

부 칙

1. 이 규정은 1994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이 규정은 1997년 7월 1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1998년 7월 10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1999년 10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07년 9월 14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포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규칙 제11장 제37조에 의거하여 전기 및 전자 공학의 교육 그리고 전기 학술 및 기술에 관하여 뛰어난 업적을 이루도록 그 가치를 포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1.11.12 개정]

제2조(학회상) 학회의 포상은 공로상, 학술상, 논문상, 기술상, 특별상, 자랑스런 전기인상, 산학협동대상, 산학협동상 및 이에 준하는 표창으로 한다. 이 상에는 상장 또는 상패와 부상이 주어진다. 표창은 이 상에 준하는 공적은 인정되나 이에 미치지 못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수상자의 수는 약간명으로 하며,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여하지 않는다. [2014.07.17, 2021.11.12 개정]

제3조(공로상) 공로상은 학회의 정회원 및 특별회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학회에서 수여한다. [2002.10.11, 2021.11.12 개정]

1. 전기 및 전자공업 또는 전기사업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2. 학회의 획기적인 발전에 공헌한 자 [2021.11.12 개정]

제4조(학술상) 학술상은 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학회에서 수여한다. [2002.10.11, 2021.11.12 개정]

1. 전기에 관한 학술 및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학술에 현저한 업적이 있는 자
2. 관련 학회지 및 저서를 통하여 전기에 관한 학술의 보급과 계몽에 현저한 업적이 있는 자

제5조(논문상) 논문상은 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우수한 논문의 저자에게 부문회에서 수여한다. 이 해당 논문은 당해 년도의 추천 마감일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하지 않는 논문으로 학회의 논문지(영문지 포함)에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002.10.11, 2021.11.12 개정]

제6조(기술상) 기술상은 학회의 정회원 및 특별회원 중에서 전기에 관한 제품, 설비 및 방식 등을 새롭게 완성하거나 개량하여 현저한 결과를 나타낸 자에게 부문회에서 수여한다. [2002.10.11, 2021.11.12 개정]

제7조(특별상) 특별상은 학회 발전에 공헌이 많고 전기 학술 및 기술발전에 공이 큰 회원이나 인사로서 특별상 기금을 출연한 후원자 명의의 특별상을 줄 수 있다. [2002.10.11, 2021.11.12 개정]

제8조(자랑스런 전기인상) 자랑스런 전기인상은 우리나라 전기공학 및 전기산업발전에 현저한 업적을 남긴 자에게 수여한다. [2004.04.09 신설, 2014.07.17 개정]

제9조(산학협동대상 및 산학협동상) 산학협동대상 및 산학협동상은 산학협동 활성화를 통하여 학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2006.11.10 신설, 2021.11.12 개정]

제10조(상금자금의 충당) 상금자금은 학회에서 설정하는 자금과 후원자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2021.11.12 개정]

제11조(포상의 후원) 제7조의 목적으로 포상의 상금에 충당할 자금을 후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소청을 받을 수 있다. 이때 후원자의 의사와 금액 등에 대하여는 이를 반영하되 본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2021.11.12 개정]

제12조(수상의 제한) 공로상, 학술상, 기술상은 수상 후 4년 이내에는 재 수상 할 수 없다. 단, 공로상의 공적 중 학회 회장 재임으로 수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002.10.11, 2019.12.13., 2021.11.12 개정]

제13조(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다음과 같이 선정 추천한다. [2002.10.11, 2014.07.17 개정]

1. 공로상, 학술상은 학회 상벌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한다. [2021.11.12 개정]
2. 논문상, 기술상은 해당 부문회의 관련 위원회에서 추천한다.
3. 특별상은 해당 부문회 이사회에서 상벌심의위원회로 추천한다.
4. 자랑스런 전기인상은 회원이 추천한다. [2014.07.17 신설]
5. 산학협동대상 및 산학협동상은 학회 산학협동위원회에서 추천한다. [2006.11.10 신설, 2021.11.12. 개정]

제14조(후보자의 추천 절차)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 서면으로 정기총회 개최 예정일로부터 20일 이전까지 학회 회장이나 부문회 회장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002.10.11, 2021.11.12 개정]

1. 상의 종별
2. 수상후보의 피추천자의 성명, 회원의 종별, 근무처 및 직위
3. 상을 받고자 하는 사항 및 그 개요
4. 추천자의 인적사항

제15조(수상자의 선정) 수상자의 선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2002.10.11, 2014.07.17 개정]

1. 공로상, 학술상은 본부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2. 논문상, 기술상은 해당 부문회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3. 특별상은 상벌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부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4. 자랑스런 전기인상은 상벌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부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2014.07.17 신설]
5. 산학협동대상, 산학협동상은 상벌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부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제16조(포상의 수여) 학회상의 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회장 또는 부문회장의 이름으로 학회 또는 부문회의 정기총회 석상 및 기타 석상에서 행한다. [2002.10.11 신설, 2021.11.12 개정]

부 칙

1. 이 규정은 1992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이 규정은 1999년 10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04년 4월 9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06년 11월 10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4년 7월 14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3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특별상 수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특별상(이하 “이 상”이라고 함)은 전기공학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를 표창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11.12 개정]

제2조(기증자의 자격) 기증자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전기공학에 관한 학문 또는 기술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서 기증금을 납입한 자.
2. 특별회원으로서 학회의 발전을 위해 특별기금을 기증한 특별회원사 [2021.11.12 개정]
3. 기타(일반) 학회 발전을 위하여 특별기금을 기증한 개인 또는 법인 [2021.11.12 개정]

제3조(기증금의 하한) 기증자별 기증금의 하한 금액은 다음 표에 따른다. 다만, 정회원의 경우 기증금 모금에 학회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기증자	하한금액	비고
공로자	2500만원	제2조 1항 해당자
특별회원	3억원내외	제2조 2항 해당자
일반	5억원내외	제2조 3항 해당자

제4조(상금의 기준) 이 상은 원칙적으로 명예로서 부상은 기증자가 기증한 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금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한다. [2021.11.12 개정]

제5조(상의 종류와 명칭) 이 상의 종류는 학술상, 기술상, 공로상으로 나누며 명칭은 기증자의 이름, 아호, 법인명, 또는 전문분야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2021.11.12 개정]

기증자	상의 명칭	비고(예시)
공로자	전문분야 또는 이름, 아호를 사용한 명칭	전력기술학술상 갑을병학술상 갑을병 전력기술학술상
특별회원	전문분야, 법인명 또는 법인대표의 아호를 사용한 명칭	
일반		

제6조(기증금의 운용) 기증금은 특별회계로 처리하되 다음과 같이 운용한다.

1. 정회원이 기증한 기증금은 법정 이자가 확정된 유가증권으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특별회원 및 일반이 기증한 기증금은 기증금의 일부는 특별상 수여에 필요한 기금으로 사용하고, 잔액은 기증자의 희망에 따라 학회 발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상의 설정) 이 상의 설정은 상별심의위원회의 추천으로 본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021.11.12 개정]

제8조(수상자 선정) 각 상에 대한 수상자 선정 과정은 기증자의 희망을 고려하여 별도로 부문회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상별심의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으로 본부 이사회에서 확정한다. [2002.10.11, 2021.11.12 개정]

제9조(상의 수여) 이 상의 시상은 정기총회에서 수여한다. [2002.10.11, 2021.11.12 개정]

부 칙

1. 이 규정은 2001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젊은 연구자 학술대상 수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전기학회(이하 “학회” 라 한다) 규칙 제11장 제36조 제5호에 의거 젊은 연구자 학술대상 (이하 “이 상” 이라 한다)은 2021년도 하계학술대회 개최 이후, 그 수익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전기공학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업적 및 창의적인 능력을 보유한 젊은 연구자를 선발하여 시상함으로써 전기공학 분야의 미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 및 상금) 이 상의 시상은 년 1회 3인의 우수한 젊은 연구자를 선정하여 학회 정기총회에서 시상하고, 상금은 젊은 연구자 학술대상 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수상자 지원 자격) 학회 회원으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회원은 지원할 수 있다.

1. 만 45세 미만인 회원
2. 최근 10년 이내 전기학회논문지 5편, 영문논문지(JEET) 2편 이상 논문을 게재한 회원 (필요 조건)
3. 해외 논문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고 연구 업적이 우수한 회원

제4조(후보자 추천) 이 규정 제3조의 자격을 갖춘 학회 회원을 본인 또는 타인이 추천할 수 있다.

제5조(후보자 제출서류) 후보자의 추천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서면으로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학회 회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자 공적조서 (인적사항 포함)
2. 최근 10년간의 연구 업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
3. 기타 업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6조(수상 예상자 선정) 학회 상벌 심의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여 수상 예정자를 선정한 후 본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단, 해당 연도 해당자가 없다고 판정될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7조(수상의 제한) 이 상의 수상은 연구자당 최대 1회에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1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경과조치) 이 상의 특별상 기금 조성은 2021년 하계학술대회 잉여금에서 조성된 금액임.

부문회 운영 규정

제1조(부문회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 “학회” 라 한다.) 규칙 제6장 제17조에 의거하여 학문 분야 간의 연계된 학술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문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11.12 개정]

제2조(부문회 부문) 학회 부문회의 부문은 다음과 같다. [2021.11.12 개정]

1. A 부문 : 전력기술 부문회
2. B 부문 : 전기기기 및 에너지변환시스템 부문회
3. C 부문 : 전기물성·응용 부문회
4. D 부문 : 정보 및 제어 부문회 [2005. 6. 10 개정 “부문회 명칭변경”]
5. E 부문 : 전기설비 부문회 [2010. 5. 14 신설]
6. I 부문 : 산업전기응용 부문회 [2024. 1. 1 신설]

제3조(부문회 업무) 부문회는 학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021.11.12 개정]

1. 부문회 학술대회 개최
2. 부문회 논문지 발간
3. 부문회의 학술분야와 직접 연관된 연구조사사업
4. 그 밖의 부문회의 고유업무

제4조(부문회 임원의 정수) 부문회의 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2000.10.13 개정]

1. 부문회 회장 1명 (학회 당연직 부회장) [2021.11.12 개정]
2. 부문회 부회장 4명 이내 [2020.03.13 개정]
3. 부문회 이사 40명 이내 [2005.07.20, 2020.03.13 개정]
4. 감 사 2명
5. ~~연구회 위원장 (당연직 이사) (항 삭제)~~ [2024.01.12 개정]

제5조(부문회 임원선출) 부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부문회의 회장, 감사는 학회 규칙 제6장 제14조 제1호에 따라 부문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여 부문회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021.11.12 개정]
2. 부문회의 부회장, 이사는 부문회 회장이 추천하여 부문회 총회에 보고한다.
3. 부문회의 임원은 본부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2021.11.12 개정]

제6조(부문회 임원의 직무) 부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2021.11.12 개정]

1. 부문회 회장은 부문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하고 부문회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문회 부회장은 부문회 회장을 보좌하여 부문회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부문회 회장 유고시에는 부문회 부회장 중 연장자가 부문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부문회 임원의 직무분담) 부문회 회장, 부문회 부회장을 제외한 부문회 임원의 직무분담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문회 총무이사는 부문회의 기획, 서무를 관장한다.
2. 부문회 재무이사는 부문회의 회계업무를 관장한다.
3. 부문회 편집이사는 부문회의 편집업무를 관장한다.
4. 부문회 학술이사는 부문회의 학술대회를 관장한다.
5. 부문회 사업이사는 부문회의 연구조사업무 및 기타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사업을 관장한다.

6. 부분회 국제이사는 국제관련업무를 관장한다. [2005.07.20 신설]
7. 부분회 협동이사는 부분회 산학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2005.07.20 신설, 2021.11.12 개정]
8. 부분회 기술이사는 부분회 산하 기술위원회 설치, 변경, 폐지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2024.01.12 조항신설]
9. 부분회 감사는 부분회의 업무집행사항 및 회계관련사항을 감사한다.
10. 기술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기술위원회 업무를 관장한다. [2024.01.12 개정]
11. 부분회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직분의 임원을 둘 수 있다. [2022.03.11 신설]

제8조(결원의 보충) 부분회 임원중에 결원이 생길 경우 후임은 부분회 회장이 임명한다.

제9조(부분회 총회의 기능) 부분회의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부분회 회칙 변경의 승인
2. 부분회 회장, 감사의 승인 및 이사의 보고
3. 부분회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4. 기타 중요사항

제10조(부분회 총회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부분회 정기총회를 연 1회 하반기에 개최한다. 단 부분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부분회의 총회는 부분회 정회원 당해연도 회비 완납자 10분의 1 이상으로 개최한다.

제11조(부분회 대의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부분회의 운영에 대한 회원의사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부분회 대의원회를 둔다.

② 부분회 대의원회는 학회 평의원 중 해당 부분회 소속 회원과 임원으로 구성한다. [2021.11.12 개정]

제12조(부분회 대의원회 기능) 부분회 대의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부분회 회장 선출
2. 부분회 감사 선출
3. 부분회 사업계획, 예산, 결산 동의
4. 부분회 회칙 개정 승인 및 내규의 제·개정 동의
5. 중요사업보고 및 자문

제13조(부분회 대의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부분회 대의원회는 부분회장이 소집하고 상·하반기 년 1회 이상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 대의원수의 2분의 1이상 출석(위임포함)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2000.10.13. 2024.06.14. 개정]

제14조(부분회 이사회 기능) 부분회 이사회는 부분회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 및 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2. 부분회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부분회 회칙 및 내규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부분회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기타 부분회 회무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부분회 이사회 소집과 의결 정족수) ① 부분회의 이사회는 부분회장이 소집하고 년 6회 이상 정기이사회를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6조(부분회 재정) 부분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부분회 회원의 회비
2. 기부금, 찬조금 또는 학회 보조금 [2021.11.12 개정]
3. 사업에 부속되는 수입
4. 기타 수입금

제17조(부분회 회원)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1개 이상의 부분회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단, 2개

이상의 부문회 활동을 원하는 회원은 추가 1개 부문회 당 회비 1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하며 이 회원은 추가 부문회 보조금 책정과 부문회 평가 시 소속 회원으로 간주한다. [2011.08.12., 2021.11.12., 2024.01.12 개정]

제18조(부문회 회칙) 부문회는 사업 및 운영을 위한 회칙을 제정 및 개정하여 본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21.11.12 개정]

제19조(부문회 예산 및 결산) 부문회의 예산 및 결산은 규칙 제6장 제16조의 정한 기간 내에 본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21.11.12 개정]

제20조(부문회 사업보고) 부문회는 매 사업마다 결과보고서를 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1.11.12 개정]

부 칙

1. 이 규정은 200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이 규정은 2005년 6월 10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5년 7월 20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0년 5월 14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1년 8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22년 3월 1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부문회 회장 및 감사 선출 절차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규칙 제6장 제14조 제2호에 의거하여 부문회 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11.12 개정]

제2조(부문회 회장 후보 등록) ① 부문회 회장 후보는 평의원 중 부문회 소속 회원으로서 부문회 대의원 3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선거일 20일 전에 학회 사무국에 입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2021.11.12., 2024.06.14. 개정]

② 부문회 회장 후보는 선거당일 간단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3조(부문회 회장 선출) ① 부문회 회장 선출은 부문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부문회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위임포함)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부문회 회장을 선출한다. [2024.06.14. 개정]

②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으로 2차 투표를 하여 다득표 자를 부문회 회장으로 선출한다. 단,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2021.11.12 개정]

제4조(사전투표) ① 선거일에 참석하지 못하는 대의원은 선거 열흘 전부터 선거 3일 전날까지 학회 사무국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단,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자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전투표 및 전자투표에 참여한 대의원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2024.06.14. 조항 신설]

제5조(부문회 감사 선출) 부문회 감사 선출은 부문회 소속 정회원 중에서 부문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부문회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위임포함)과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부문회 감사를 선출한다. [2021.11.12., 2024.06.14. 개정]

부 칙

1. 이 규정은 2000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경과조치) 2000년~2001년도의 부문회 회장 및 부문회 감사선출은 평의원중 부문회 소속회원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선출한다. 단,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2001년 12월 말까지로 한다. [2024.01.12 개정]
3. 이 규정은 2000년 10월 13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4. (경과조치) 2001년도 부문회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2000년도에 개최되는 부문회 대의원회는 출석 대의원으로 성립하되 의결은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5.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부문회 신설과 유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 “학회” 라 한다) 부문회를 신설하거나 유지하는 자격에 관한 규정이다. [2021.11.12 개정]

제2조(부문회 운영 기본 조건) 부문회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만족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2021.11.12 개정]

1. 연간 논문 게재편수 : 120편 이상으로 국문논문지 및 영문논문지의 게재 편수를 합하여 산출한다.
2. 회원 수 : 종신회원을 포함한 연회비 납부 정회원을 300인 이상 유지한다. [2021.11.12 개정]

제3조(평가) ① 총무이사는 평가 자료를 준비하여 매년 상반기 중에 본부 이사회에 보고하고, 본부 이사회는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2021.11.12 개정]

② 부문회에 대한 평가 결과는 전기의 세계를 통해 발표한다.

③ 본부 이사회는 평가 대상 부문회 중 우수 부문회를 선정하고 시상할 수 있다. [2021.11.12 개정]

제4조(신설) 부문회의 신설은 본부 이사회 의 승인을 거쳐 평의회 의결로 신설한다. [2021.11.12 개정]

제5조(해산) 회장은 다음의 경우, 본부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 해당 부문회를 해산시킬 수 있다. [2021.11.12 개정]

1. 부문회가 학회 정관에 위배된다고 판정될 경우 [2021.11.12 개정]
2. 부문회가 자체적으로 해산을 요청하였을 경우

부 칙

1.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이 규정은 2016년 1월 15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부회 설치 및 신설과 유지에 관한 규정

제1조 이 규정은 대한전기학회 부회를 설치하고 신설하거나 유지하는 자격에 관한 규정이다.

제2조(부회의 정의) 부회는 대한전기학회에서 학술활동 및 산업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직이다.

제3조(부회의 조직 및 운영) 부회의 조직 및 운영은 부문회 규정에 준하여 따른다.

제4조(부회 자격 유지 조건) 부회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각 항을 만족해야 한다. 부회별 연간 개최 워크숍 또는 세미나 등의 수, 정회원 수, 하계 학술대회 발표 논문 수를 매년 일정 수 이상 유지해야 한다.

1. 연간 개최 워크숍 또는 세미나 등의 수 : 2회 이상. 하계학술대회 기간 중 개최한 것은 제외한다.
2. 회원 수 : 종신회원을 포함한 년회비 납부 정회원을 합한 수 200명 이상으로 한다.
3. 하계 학술대회 발표 논문 수 : 80편 이상.
4. 하계 학술대회 기간 중 개최한 전문 워크숍 : 1회 이상.

제5조(평가) 1. 이사회는 부회를 매 2년 (짝수 년)에 평가한다.

2. 총무 이사는 자료를 준비하여 상반기 중의 이사회에 보고한다.
3. 이사회는 부회를 폐지할 수 있고,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조(신설 및 보육) 1. 부회의 신설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평의원회 의결로 신설한다.

2. 부회는 자격 유지 조건의 50% 이상을 동시에 만족해야 신설을 요청할 수 있다.
3. 신설 부회는 신설 후 2년 후의 첫 번째 수년에 자격 유지 조건의 70% 이상을 만족해야 하며, 다음 2년 후 100% 를 만족해야 한다.
4. 3항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이사회와 평의원회의 의결로 폐지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원회 설치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규칙 제7장 제20조 제②항에 의거하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11.12., 2024.03.08 개정]

제2조(설치 신청) ① 학회 및 부문회 소속에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회장에게 신청한다. 단 학회 소속에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되는 분야의 부문회 회장의 동의를 득한 후 설치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21.11.12. 개정] [2022.03.11 개정]

1. 설치 취지문
2. 운영계획서
3. 발기인 명부(학회 정회원 50명 이상)
4. 설치 승인을 위한 부문회 동의서

② 부문회 소속에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부문회 이사회 승인 후,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회장에게 신청한다. [2022.03.11 개정]

1. 설치 취지문
2. 운영계획서

제3조(설치 승인) ① 회장은 설치 신청 사항을 기획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고 위원회에서는 승인 여부를 검토한 후 이사회에 상정하여 심의와 의결을 거쳐 설치를 승인한다.

② 부문회 소속 위원회 승인 절차는 제3조 제①항과 동일하다. [2021.11.12 개정]

③ 승인된 위원회는 승인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본부 이사회(부문회 소속 위원회의 경우 부문회 이사회)에 규정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1.11.12 개정]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학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장은 회장(부문회의 경우 부문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1.11.12 개정]

② 위원장의 임기의 경우 학회 소속 위원회는 3년 이내(1회 연임 가능)로 하고, 부문회 소속 위원회는 내규(각 위원회 규정)에 따르기로 한다. [2021.11.12 개정]

제5조(해산) 위원회의 활동이 부진하거나 설치의 취지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될 때는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시킬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2년 3월 1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4년 3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기술위원회 신설, 운영 및 폐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규칙 제6장 제19조 제②항에 의거하여 학회 회원의 학문 분야별 연구 및 기술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문/기술 분야별 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 신설과 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변경 신청) 부문회 소속으로 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부문회 회장이 회장에게 신청한다. 또한 기존 기술위원회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신규 설치 승인 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부문회 기술위원회(Study Committee) 신설 신청서

제3조(설치 승인) 회장은 설치 신청 사항을 기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통보하고 협의회에서는 신청 사항을 검토한 후 이사회에 상정하고 이사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 설치를 승인한다.

제4조(운영내규) 각 부문회는 학회 정관에 부합되는 범위에서 기술위원회 운영 내규를 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5조(구성 및 관리) ① 기술위원회는 부문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부문 회장이 관장한다. ② 기술위원회 위원장은 부문 회장이 부문회 회원 중에서 임명하고 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기술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부문회 내규에 따르기로 한다.

제6조(WG/TF 운영) ① 기술위원회는 원활한 연구 및 기술활동을 위하여 산하에 WG/TF (3년 이내 일몰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술위원회는 산하 WG/TF을 공모, 구성한 후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부문회를 통해 협의회에 설치 신청을 하여야 하며, 협의회 승인 후 WG/TF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

1. WG/TF 신설 신청서 (활동기간 포함)

③ 기술위원회 위원장은 산하 WG/TF의 연간 활동보고서 및 최종 기술보고서를 취합하여 부문회를 통해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가입) 학회 회원은 희망에 따라 소속 부문회 산하 복수의 기술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중 정회원은 해당 기술위원회 산하 WG/TF에서 활동할 수 있다.

제8조(폐지) 기술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 부문회 회장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지 사유서 (기술위원회 동의 포함)

부 칙

1.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전문위원회 신설 및 폐지에 관한 규정

제1조 이 규정은 대한전기학회 전문위원회를 신설과 폐지에 관한 규정이다.

제2조(전문위원회의 목적) 전문위원회는 대한전기학회에서 특정 전문분야의 학술활동 및 산업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직이다.

제3조(신설)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회장에게 신청한다.

1. 설치 취지문
2. 운영 계획서
3. 발기인 명부 : 종신회원 포함 납부 정회원 100명 이상

제4조(설치 승인) 회장은 설치 신청 사항을 기획정책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에서는 승인 여부를 검토한 후 이사회에 상정하여 심의와 의결을 거쳐 설치를 승인한다.

제5조(폐지) 전문위원회는 최대 3년간 유지할 수 있고, 3년 경과시 폐지되며, 이사회에 보고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4년 03월 08일부터 시행한다.(제정)

Working Group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 “학회” 라 한다)의 연구그룹인 Working Group(이하 “WG” 라 한다)의 설치, 운영 및 자격 유지에 관한 규정이다. [2021.11.12 개정]

제2조(정의 및 목적) WG은 전기 분야 관련 학계, 산업계 및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적 및 정책적 특정주제에 대하여 일시적인 소규모의 산학연관 관련 전문가 WG를 조직하여, 해당 과제에 대한 조사, 기획 및 연구를 수행하여 결과물을 창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21.11.12 개정]

제3조(조직 및 운영) WG의 조직 및 운영은 위원회 규정에 준하여 따른다. [2024.01.12 개정]

제4조(신설 및 활동 기간) ① WG은 주제와 관련된 위원회에 소속된다. [2024.01.12 개정]

② WG은 각 위원회 위원장이 신설의 필요성을 사전 검토 후 부문회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신설한다. [2024.01.12 개정]

③ 각 WG의 활동 기간은 설치 후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활동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이 필요한 경우 WG 그룹장의 요청에 의해 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본부 또는 부문회 이사회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다. 활동 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해 1년으로 한정한다. [2024.01.12 개정]

제5조(구성) ① WG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1명의 그룹장과 1명의 총무 및 일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WG 신설 요청 시 위원회 위원장이 WG 그룹장을 임명하며, 총무는 WG 그룹장이 추천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2024.01.12 개정]

③ WG 위원은 WG 그룹장이 결정하여 학회에 보고한다. [2024.01.12 개정]

제6조(유지 조건) ① 설립된 WG의 활동은 WG 위원장의 보고서를 근거로 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본부 또는 부문회 이사회에 매년 연말 1회 보고한다. [2024.01.12 개정]

② WG은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당 학회 또는 부문회에서 정한 양식에 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다. [2021.11.12 개정]

제7조(평가) 학회 또는 부문회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소속 WG의 조기 폐지를 의결할 수 있고, 학회 또는 부문회 회장은 의결 사항에 대해 WG이 소속된 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한다. [2021.11.12. 개정], [2024.01.12 개정]

제8조(활동 지원) ① WG 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에서 자율적 지원을 하도록 한다. [2024.01.12 개정]

② WG 결과물에 대해서는 연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회의 출판물로 유료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의 일정 부분을 해당 WG 소속의 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다. 수익 배분에 관한 기준은 해당 본부 또는 부문회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본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되도록 한다. [2021.11.12 개정] [2024.01.12 개정]

부 칙

1. 이 규정은 2010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학회지 편집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 “학회” 라 한다) 학회지(전기의 세계)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2.12.13, 2021.11.12 개정]

제2조(내용) 학회지에는 권두언, 특집, 기술동향 및 개발, 해설, 수필, 학회소식, 광고 등 광범위한 분야의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사를 게재한다.

제3조(업무) 학회지의 발행에 대한 업무는 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가 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2021.11.12 개정]

1. 학회지의 편집전반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학회지의 기획, 편집, 게재 제목, 집필 내용, 집필자 선정, 발행에 관한 사항
3. 학회지에 게재하는 인터뷰, 취재, 좌담회의의 테마, 내용 및 참가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학회지의 표지, 권두언, 수필, 광고 등의 기획, 검토에 관한 사항
5. 학회지 투고 기사의 채택 여부에 관한 사항
6. 학회지의 편집 일정, 진행 상황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회지의 편집에 관한 필요 사항

제4조(투고 및 채택) 학회지에 투고된 내용의 채택여부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021.11.12 개정]

제5조(발행 회수) 학회지는 월간으로, 발행일은 해당 월 1일로 한다. [2002.12.13 개정]

부 칙

1. 이 규정은 200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이 규정은 2001년 12월 17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2년 12월 13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국문논문지 편집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 “학회” 라 한다) 국문논문지(전기학회논문지, 이하 “국문논문지” 라 한다.)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11.12. 개정 / 2023.11.10. 개정]

제2조(업무) ① 국문논문지의 편집 및 발행에 대한 업무는 학회 국문논문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다만 기본 방침 수립 및 조정은 학회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021.11.12 개정]

② 위원회는 국문논문지 편집 및 발행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 한다. [2021.11.12 개정 / 2023.11.10. 개정]

1. 국문논문지의 기획, 편집에 관한 사항
2. 투고 논문의 심사자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
3.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 타당성의 확인에 관한 사항
4. 반송 논문 등의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논문 심사의 진행에 관한 사항
6. 논문 철회에 관한 사항 [2021.11.12 신설]

③ 국문논문지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문논문지 논문 심사 규정” 및 “국문논문지 심사 요령”에 정한다.

[2021.11.12 개정 / 2023.11.10. 개정]

제3조(논문 구비 조건) ① 국문논문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전기공학 분야의 학술과 기술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야 하고, 그 내용에 명백하게 나타나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다른 공개 출판물에 발표가 되지 않은 내용이라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한다.

1. 객관적으로 창의가 인정되어야 한다.(창조성)
2. 객관적으로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신규성)

② 또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신규 논문으로 투고할 수가 있다. [2023.11.10. 개정]

1. 학회가 주최 또는 공동 주최한 각종 학술대회, 이에 준하는 집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포함한 논문

[2021.11.12 개정] [2024.01.12 개정]

③ 국문논문지에 게재되는 자료는 다른 공개 출판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며,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1. 해설의 계통적 정리
2. 각종 실험결과, 시험사항, 계산수치표, 현장기술에서 일반성이 있는 내용
3. 학술적, 기술적으로 현재 주목하는 사항의 종합보고
4. 기타 학술적, 기술적 기여가 인정되는 내용

제4조(저작권 및 출판권) 각 논문의 저작권재산권은 각 원고 투고 시에 투고자가 제출한 저작권재산권 양도 확인서에 의해 학회에 귀속되며, 출판권은 학회가 소유한다. [2021.11.12 개정]

제5조(발행 회수) 국문논문지는 월간으로 발행하고, 발행일은 해당 월 1일로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2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영문논문지(JEET) 편집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 “학회” 라 한다) 영문논문지(Journal of Electrical Engineering & Technology, 이하 “영문지” 라 한다)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11.12 개정]

제2조(업무) ① 영문지의 편집 및 발행에 대한 업무는 학회 영문논문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다만 기본 방침 수립 및 조정은 본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2021.11.12 개정]

② 위원회는 영문지 편집 및 발행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2021.11.12 개정]

1. 영문지의 기획, 편집에 관한 사항 [2021.11.12 개정]
2. 투고 논문의 심사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 타당성의 확인에 관한 사항
4. 논문 게재와 관련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논문 심사의 진행에 관한 사항
6. 논문 철회에 관한 사항 [2017.10.13 개정]

③ 영문지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문논문지 투고 요령” 및 “전기학회논문지 심사 요령”에 정한다. [2021.11.12 개정]

제3조(논문 구비 조건) ① 영문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전기공학 분야의 학술과 기술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야 하고, 원칙적으로 다른 공개 출판물에 발표가 되지 않은 내용이라야 한다. [2021.11.12 개정]

② 다만 학회가 주최 또는 공동 주최한 각종 학술대회, 이에 준하는 집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포함한 논문은 신규 논문으로 투고할 수 있다. [2021.11.12 개정] [2024.01.12 개정]

제4조(저작권 및 출판권) 출판 논문의 저작권재산권은 논문 최종본 제출 시에 채택된 논문의 저자가 제출한 저작권재산권 양도 확인서에 의하여 학회에 귀속되며, 출판권은 학회가 소유한다. [2009.10.01, 2021.11.12 개정]

제5조(발행 회수) 영문지는 격월간으로 발행하고, 발행일은 1월 1일, 3월 1일, 5월 1일, 7월 1일, 9월 1일, 11월 1일로 한다. [2010.11.01, 2021.11.12 개정]

부 칙

1. 이 규정은 2006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3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국문논문지 논문 심사 규정

- 제1조**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 “학회” 라 한다) 국문논문지(전기학회논문지, 이하 “국문논문지” 라 한다.)에 게재할 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11.12. 개정 / 2023.11.10. 개정]
- 제2조** 국문논문지의 심사에 대한 업무는 학회 편집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각 부문회 편집위원회에서 수행한다. 다만 기본 방침 수립 및 조정은 학회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009.10.01, 2021.11.12 개정 / 2023.11.10. 개정]
- 제3조** 각 부문회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및 논문지 투고 규정” 과 “국문논문지 투고 요령” 에 따라 검토한 후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회부 조건이 미비한 경우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편집위원장 명의로 반려한다. [2009.10.01. 개정 / 2021.11.12 개정 / 2023.11.10. 개정]
- 제4조** 심사 회부 조건이 구비된 논문에 대하여 각 부문회 편집위원회는 담당 편집위원을 배정하고 “국문논문지 심사 요령” 에 따라 심사를 의뢰한다. [2023.11.10. 개정]
- 제5조** 편집위원은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이를 각 부문회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국문논문지 심사 요령” 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2023.11.10. 개정 / 2023.11.10. 개정]
- 제6조** 논문을 제출한 위원은 해당 논문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 제7조** 편집위원은 논문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각 부문회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각 부문회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게재 가부를 결정한다. [2023.11.10. 개정]
- 제8조**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으로부터 질의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주선해야 한다.
- 제9조** 편집위원장은 심사 결과가 게재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게재 대기 서열을 정하고, 부결된 논문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투고자에게 반려한다.
- 제10조** 회의에서는 논문 제출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며 논문심사 위촉에 관한 회의 상황은 일체 외부에 공개하지 못한다.
- 제11조** 국문논문지의 투고자는 학회 윤리위원회 규정 제7조를 동의·수락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1.11.12 신설 / 2023.11.10. 개정]

부 칙

1. 이 규정은 197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이 규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1998년 6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1999년 10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영문논문지 논문 심사 규정

- 제1조**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영문논문지에 게재할 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11.12 개정]
- 제2조** 영문논문지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이하 “편집위원장”이라 한다)은 영문논문지 투고 요령에 따라 검토한 후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회부 조건이 미비한 경우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편집위원장 명의로 반려한다.
- 제3조** 심사 회부 조건이 구비된 논문에 대하여 영문논문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담당 편집위원을 배정하고 영문논문지 논문 심사 규정(이하 “논문 심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심사를 의뢰한다. [2021.11.12 개정]
- 제4조** 편집위원은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이를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며 논문 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 제5조** 논문을 제출한 위원은 해당 논문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 제6조** 편집위원은 논문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021.11.12 개정]
- 제7조**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으로부터 질의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주선해야 한다.
- 제8조** 편집위원장은 심사 결과가 게재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게재 대기 서열을 정하고, 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제9조** 논문 제출자의 명단 및 논문 심사 위촉에 관한 제반 사항은 일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0조** 회의에서는 논문 제출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며 논문심사 위촉에 관한 회의 사항은 일체 외부에 공개하지 못한다. [2021.11.12 신설]
- 제11조** 학회 논문지의 투고자는 학회 윤리위원회 규정 제7조를 동의·수락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1.11.12 신설]

부 칙

1. 이 규정은 2006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학회지 및 논문지 투고 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발행하는 학회지, 논문지(국문논문지 및 영문논문지)의 투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11.12. 개정 / 2023.11.10. 개정]
- 제2조** 원고의 투고자(공동저자 포함)는 회원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학회 및 부문회 편집위원회에서 예외로 인정한 경우 [2021.11.12 개정]
 2. 논문을 제외한 기사인 경우(기술해설, 특집, 기타)
- 제3조** 원고는 논문, 기술보고, 기술자료, 기술해설, 문헌소개, 기타 학술 및 기술상 기여된다고 인정되는 자료로 한다.
- 제4조** 원고는 학회지와 논문지에 투고하기 전에 공개 출판물에 발표하지 않았던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1.11.12 개정 / 2023.11.10. 개정]
- 제5조**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투고 원고의 접수일은 그 원고가 학회에 접수된 일자로 한다.
- 제6조** 원고의 채택 여부는 학회지 편집위원회, 각 부문회 국문논문지 편집위원회, 영문논문지 편집위원회 등의 관련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르며 관련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수정, 보완 및 축소를 요구할 수 있다. [2009.10.01, 2021.11.12 개정 / 2023.11.10. 개정]
- 제7조** 원고는 국문(한자 포함) 혹은 영문으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논문 투고 요령에 따른다.
- 제8조** 국문논문지 투고 요령에 위배된 원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2021.11.12 개정 / 2023.11.10. 개정]
- 제9조**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료를 투고자가 부담하고, 논문 이외의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 채택된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투고자가 부담한다.
- 제11조** 채택된 논문 저자는 사진과 간단한 이력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3.11.10. 개정]
- 제12조** 채택된 논문은 게재 확정 판정 순서대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2023.11.10. 개정]
- 제13조** 원고 및 편집에 관한 모든 연락은 학회 사무국으로 한다. [2009.10.01, 2021.11.12 개정]
- 제14조** 학회지 및 논문지의 투고자는 학회 윤리위원회 규정 제7조를 동의·수락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1.11.12 신설 / 2023.11.10. 개정]

부 칙

1. 이 규정은 196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이 규정은 1973년 3월 23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1987년 1월 9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1997년 6월 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1998년 6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1999년 10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IJCAS 사무국 관리(운영 및 편집) 규정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규칙 제7장 제20조에 근거하여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 정보 및 제어부문회와 사단법인 제어로봇시스템학회가 공동으로 발간하는 영문논문지인 제어자동화시스템 국제논문지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rol, Automation, and Systems, 이하 “IJCAS” 로 칭함) 관리(사무국 운영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021.11.12 개정]

②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는 정보 및 제어부문회에 사단법인 제어로봇시스템학회와 IJCAS에 대한 사항 일체를 무기한 위임한다. 위 위임은 정보 및 제어부문회장의 동의 없이 철회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

제2조(운영) ① 대한전기학회 내 정보 및 제어부문회장은 대한전기학회 회장의 위임을 받아 IJCAS 관리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즉, IJCAS 관리에 관한 모든 의사 결정은 정보 및 제어부문회 회장이 하며, 주요 결정 사항은 결정 후 대한전기학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21.11.12 개정]

② 정보 및 제어부문회장은 사단법인 제어로봇시스템학회장과 IJCAS 운영에 관한 일체의 규정을 만들 수 있다. 단, 변경된 IJCAS 운영에 관한 규정은 추후 대한전기학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국 및 직원 관리) ① IJCAS의 사무국은 대한전기학회 정보 및 제어부문회와 제어로봇시스템학회가 협의한 IJCAS 운영 규정에 따라 5년간 일방 학회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5년이 경과하면 IJCAS의 사무국은 상대방 학회로 이전하여야 한다.

② IJCAS의 사무국을 대한전기학회로 이전할 경우, 정보 및 제어부문회가 이를 관리한다. [2021.11.12 개정]

③ IJCAS의 사무국 직원은 대한전기학회 직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새로이 채용한다.

1. 대한전기학회 직원 중에서 임명할 때는 일정 임금을 정보 및 제어부문회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1.11.12 개정]

2. 신규 채용 시의 직원의 일정 임금은 대한전기학회 정보 및 제어부문회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1.11.12 개정]

④ IJCAS 직원의 임금 규정은 대한전기학회 임금 규정을 따른다. [2021.11.12 개정]

⑤ IJCAS를 정보 및 제어부문회에서 관리할 때, IJCAS 직원의 신규 채용은 정보 및 제어부문회 회장의 추천에 따라 대한전기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이때, IJCAS 운영위원장이 면접 위원 중 1인으로 위촉될 수 있다. [2021.11.12 개정]

제4조(편집위원장 임명) IJCAS의 편집위원장(Editor-in-Chief)은 양 학회장이 2년마다 번갈아 임명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나, 양 학회 중 한 학회가 거부할 시 연임은 불가하다. 단, 대한전기학회에서 편집위원장을 추천하고 임명할 경우에 정보 및 제어부문회 회장이 부문회 운영위들과 상의하여 임명할 권한을 갖는다. 다만 이 결과는 추후 대한전기학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 ① IJCAS에서 매년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 부분은 IJCAS 운영금으로 사용하고 잉여 수익금은 양 학회가 반분하여 재정으로 확보한다.

② IJCAS에서 정보 및 제어부문회에 배당된 수익금은 정보 및 제어부문회 회계에 편입시킨다.

③ 정보 및 제어부문회에 배당된 수익금에 대해서는 대한전기학회 규정에 따른 일정 비율을 대한전기학회에 지급한다. [2021.11.12 개정]

④ 직원 임금에 대한 재원은 IJCAS 수익금과 제어로봇시스템학회의 분담금 및 외부 지원금 등을 통해서 정보 및 제어부문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다.

⑤ IJCAS를 정보 및 제어부문회에서 관리할 때, 사무국 회계는 정보 및 제어부문회 자체에서 관리 및 감사를

받는다. [2021.11.12 개정]

제6조(IJCAS 공로상, 학술상) ① 대한전기학회 제어 및 정보 부문회 IJCAS 공로상, 학술상은 IJCAS 학술부문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IJCAS 수익금(또는 기금)에서 수여한다.

② IJCAS 학술 수상 위원회는 정보 및 제어부문회 회장단과 이사회에서 3~5인 내외로 구성한다.

제7조(기타) 상기 외에 규정은 정보 및 제어부문회 회칙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9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연구개발 사업 운용 및 관리 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전기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연구개발 사업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정함으로서 연구 업무 관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11.12 개정]
-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학회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개발 사업에 적용하며, 법령 및 규정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1.11.12 개정]
- 제3조(계획서 작성 및 신청)**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개발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회는 연구책임자와 협조하여 연구개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회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 의뢰 기관에 학회 명의로 연구 사업을 신청한다.
- 제4조(계약 체결)** 학회는 연구 의뢰 기관과 계약 조건을 협의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며 학회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체결 내용을 연구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계약의 변경)**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 수행 중 연구 의뢰 기관의 요청 또는 연구책임자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연구 의뢰 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학회는 승인 요청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수정된 계약 내용을 연구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 제6조(연구비 관리)** ① 연구비는 회장의 책임 하에 학회에서 관리한다.
 ② 연구비는 학회에서 연구 의뢰 기관에 청구하고 학회의 약정된 통장으로 입·출금하며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연구비 청구)**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사업계획서에 비목별로 명시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연구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학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2003.07.11 개정]
 ② 연구비 청구 시 연구책임자는 청구 금액에 해당하는(Over Head 제외)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영수증 첨부 시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21.11.12 개정]
- 제8조(연구비 지급)** ① 학회는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소정의 증빙 서류 및 실행 예산을 검토한 후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② 인건비 지급 시 학회는 참여 연구원의 계좌를 이용하여 개인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연구비 사용)** ① 연구비는 사업계획서에 정한 기준에 따라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중 비목 간 연구비를 20% 이상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와 내역을 명시하여 학회에 제출하고 연구 의뢰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구비는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 이내에 지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사용할 수 있다.
 ④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사용 및 관리에 있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비 사용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 제10조(여비 계산 및 지급)** 여비는 학회 사무국 복무규정 제5장의 여비규정에 준하여 별표 1~2에 따라 지급한다. 단, 책임급 또는 부교수이상 연구원인 경우는 임원급에 준하며, 선임급 또는 조교수 이하 연구원인 경우는 사무국장급에 준하고, 대학원생 또는 원급 연구원인 경우는 직원급에 준한다. 여비는 출장품의서를 작성한 후 회장의 최종 결재에 의하여 지급한다. [2021.11.12 개정]
- 제11조(기관수용비 징수)** ① 학회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 연구비 총액의 일정비율을 기관수용비(Over Head)로 징수한다.
 ② 기관수용비 징수 방법은 총 연구개발비의 총액(현금부분) 10% 이상을 징수한다. 단, 개인 또는 부문회에서

개발한 용역에 한해서는 3%의 인센티브를 용역 개발자 또는 부문회에 지급한다. [2004.12.10 개정]

③ 정부 및 기타 학술 연구용역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관수용비(간접비) 인정비율이 10% 이하인 과제에 한하여 회장이 별도로 기관수용비를 조정하여 징수 할 수 있다.

④ 제11조 제③항을 적용 할 경우 학회 Over Head는 7% 이상을 징수한다. [2021.11.12 개정]

⑤ 학회의 기여금은 제11조 제②항과 관련 없이 별도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2021.11.12 개정]

제12조(중빙 서류 보관) ① 학회는 연구 완료 후 연구비 사용내역을 기재한 대장 또는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학회는 연구비 정산에 관한 서류 원본 또는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이 규정은 2003년 7월 1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4년 12월 10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